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355
----------	------

2013년 7월 5일  
환경수자원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3년 6월 12일, 진두생 의원 외 12명
- 나. 회부일자 : 2013년 6월 18일
- 다. 상정일자 : 제247회 서울특별시의회 제4차 환경수자원위원회  
(2013년 7월 5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 설명자: 진두생 의원)

가. 제안이유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지원대상자를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하여 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 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금 대상자를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도록 함(안 제3조제2항)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임(안 제8조제4항)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

나. 예산조치 : 별도예산 없음

다. 협의사항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별첨)

##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 안석수)

### 가. 개요

- 본 개정조례안은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의 지원대상자 선정기준을 명확히 하고,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것임.

### 나. 제안배경

- 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대하여 지원기금을 조성하여 개별세대별로 지역난방비, 관리비, 임대료(임대주택에 한함)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 주민지원계정 운용협의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여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임.

### 다. 검토의견

#### 1) 주민지원계정 지원대상자를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3조제2항)

- 자원회수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계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제22조와 본 조례에 따라 자원회수시설 주변 간접영향지역 내 주민의 소득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조성된 것으로 양천, 강남, 노원자원회수시설<sup>1)</sup> 주변의 간접영향지역<sup>2)</sup>

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 대하여 개별세대별로 지역난방비 70%, 관리비, 임대료<sup>3)</sup> 등을 지원하고 있으나,

- 지원대상을 결정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지원금 지급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 지원대상을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 할 수 있음.

## 2) 주민지원계정 운용협회의 회의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제4항)

- 서울시는 주민지원계정의 조성 및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자원회수시설별로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계정운용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함)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서울시에서는 현재 자원회수시설 홈페이지(<http://rrf.seoul.go.kr/main.jsp>)를 통해 주민지원계정의 예산 집행내역을 공개하고 있음. 협의회의 정기회나 임시회의 회의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추가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것은 주변영향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정보전달 및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1) 마포자원회수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 300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개별세대별로 지원하는 금액이 없음

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3) 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에 한하여 지원하고 있음.

## ※ 참고법령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주변영향지역의 결정·고시)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이 공고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이하 "주변영향지역"이라 한다)을 결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항에 따라 주변영향지역을 결정·고시하려면 제17조의2에 따라 구성된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가 선정한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환경상 영향을 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지원협의체가 주변지역의 환경상 영향 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생략하거나 관계 전문가의 검토의견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③ 주변영향지역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직접 영향권 :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인체·동물의 활동, 농·축산물, 임산물 또는 수산물에 직접적으로 환경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어 지역주민을 이주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
2. 간접 영향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지역으로서 제2항에 따라 환경상 영향을 조사한 결과 환경상 영향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직접 영향권 외의 지역.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밖의 지역도 포함시킬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직접 영향권으로 결정된 지역의 토지 등을 소유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에 그 토지 등의 매수(買收)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4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를 제20조와 제23조에 따른 주민편익시설, 녹지(綠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1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민지원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주민지원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의 출연금(出捐金)
2.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
3. 제8조에 따른 가산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긴 수익금
5.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처리하려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주민지원기금의 운용·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주민지원기금에 의한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①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은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소득 향상 및 복리 증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와 금액은 직접 영향권과 간접 영향권별로 달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은 주변영향지역의 주민이나 가구별로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사업의 종류, 지원기준·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간접 영향권의 범위)** 법 제17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폐기물매립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2킬로미터 이내 또는 그 밖의 폐기물처리시설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 이내를 말한다. <개정 2012.3.30>

**제27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법 제22조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의 여건과 법 제21조에 따른 주민지원기금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가구별로 지원하거나 별표 3의 지원사업을 실시하되,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지원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는 경우 **직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고, **간접 영향권** 안의 주민에 대하여는 공동사업의 형태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이 가구별로 지원하는 것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

③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관은 제18조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를 거쳐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의 목적
2. 지원기간
3. 연차별 출연 재원의 규모 및 조달계획
4. 지원사업의 내용과 지원기간 중 연차별 투자계획
5. 지원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효과

[별표 3] <개정 2009.6.16>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종류(제27조제1항 관련)

사업 구분	사업 내용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1. 소득증대 사업	농림수산업시설	공동영농·영어(營漁)시설(공동영농기계·공동축산·공동어선을 포함한다), 농기구 수리시설, 공동양식·양어장, 생산품 공동저장소, 공동가공공장, 농업용 저수지, 농로(農路), 임도(林道), 농업용수로, 농업용양수장, 농작물 및 임산물 재배시설 등
	상공업시설	공업용 수도, 직업훈련소, 시장, 공용창고, 구판장(購販場), 소규모공단 등
	관광산업	휴게소, 휴양소, 토산품 판매장 등
2. 복리증진 사업	의료시설	보건진료소 등
	사회복지시설	노인회관, 마을회관, 공중목욕탕, 가로등, 어린이놀이터, 버스승차대기장 등
	도로시설	소규모 도로 등
	항만시설	소형선박용 항만시설, 소규모 어항, 호안옹벽(護岸擁壁), 방파제 등
	상하수도시설	상수도시설·하수도시설 등
	교육·문화시설	도서관, 유치원, 통학차, 문화시설, 향토박물관, 사적시설, 사회교육시설 등
	환경·위생시설	쓰레기처리시설, 배수구시설, 청소차, 공중위생시설, 환경감시시설 등
	운동·오락시설	운동장, 야영장, 운동기구 등
	전기·통신시설	공용 전기시설 및 전화시설, 텔레비전방송공동수신시설 등
	그 밖의 시설	<b>지역 난방시설 및 난방비 지원</b> (소각시설만 해당한다), 주택개량 등의 주거환경 개선(난방·난방시설의 설치사업을 포함한다) 등

사업 구분	지원사업의 세부내용
3. 육영사업	컴퓨터·피아노 등 교육기자재 지원, 학자금 및 장학금 지급, 장학기금 적립, 학교급식 지원 등
4. 그 밖의 사업	그 밖에 소득증대사업·복리증진사업·육영사업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장이 고시하거나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사업

※ 비고: 지원사업의 내용에는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및 육영사업 등과 관련된 계획·조사 및 연구 사업과 시설의 유지·보수 및 운영 업무가 포함된다.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8. 심사결과 : 원안 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자원회수관련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

제8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협의회는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지원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3. (생략)</p> <p><u>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u></p> <p>제8조(회의) ① ~③ (생략)</p> <p style="text-align: right;">〈신설〉</p>	<p>제3조(주민지원계정의 용도) ① 주민지원 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3. (현행과 같음)</p> <p><u>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민에 대한 지원금은 가구별로 지원하되, 지원대상은 지원결정일 현재 거주자로 한정한다.</u></p> <p>제8조(회의) ① ~③ (현행과 같음)</p> <p><u>④ 협의회 정기회 및 임시회의 회의결과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u></p>